국무회의 보고자료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

2007. 3.

법 제 처

보고 순서

서

Ⅰ.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현황과 특징 ····· 1

1. 입법추진 현황 ····· 1

2. 입법추진 특징 ····· 3

Ⅱ.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주요 성과 ····· 5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의 추진 ····· 5

2.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입법 증가 ····· 7

3.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노력 ····· 8

4. 취약 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 증가 ····· 9

Ⅲ.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과제 ····· 10

1. 주요 정책과제의 마무리 입법 추진 ····· 10

2.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등에 의한 입법 추진 ····· 10

[붙임 1] 정부가 사실상 입안 지원한 의원입법 주요 사례 (예시) ····· 11

[붙임 2]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 16

[붙임 3]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사항 추진 현황 ····· 19

[붙임 4] 입법환경 대응 시스템 마련과 법령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 20

[붙임 5] 참여정부 입법추진 주요 우수사례 (예시) ····· 22

< 보 고 이 유 >

□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와 비교할 때, 복잡·다원화된 **어려운 입법 환경**하에서도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됨

□ 입법추진 결과에 대한 **질적·내용적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개혁, 주요 정책의 **법제화 결과**를 **확인·공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남은 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되는 **객관적 입법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Ⅰ.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현황과 특징

1 입법추진 현황

▣ 정부입법: 4년 동안 929건 국회 제출, 647건 국회 통과
(2007년 정부입법계획 328건 포함 시 1,257건에 이름)

※ 참여정부 4년간 제출한 법률이 문민정부(830건), 국민의 정부(1,097건: 규제개선을 위한 단순 개정 포함) 5년 동안 제출한 건수보다 많거나 비슷함

▣ 의원입법: 같은 기간 동안 5,161건 발의, 793건 국회 통과

※ 문민정부(701건), 국민의 정부(1,926건) 5년에 비해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

※ 통과된 총 793건의 의원입법 중 72건은 사실상 정부가 입안 지원한 법률로 파악됨

□ 정부입법

○ 과거 정부에서는 초기에 비해 해가 갈수록 **국회제출 건수가 감소**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증가**

* 2003년(**148건**) → 2004년(**207건**) → 2005년(**242건**) → 2006년(**332건**)
(2006년 332건에는 알기 쉽게 만든 전부개정 법률안 63건이 포함된 것임)

– 처음부터 주요 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계획적·적극적 입법**을 추진한 결과

< 역대 정부별 정부입법 국회 제출건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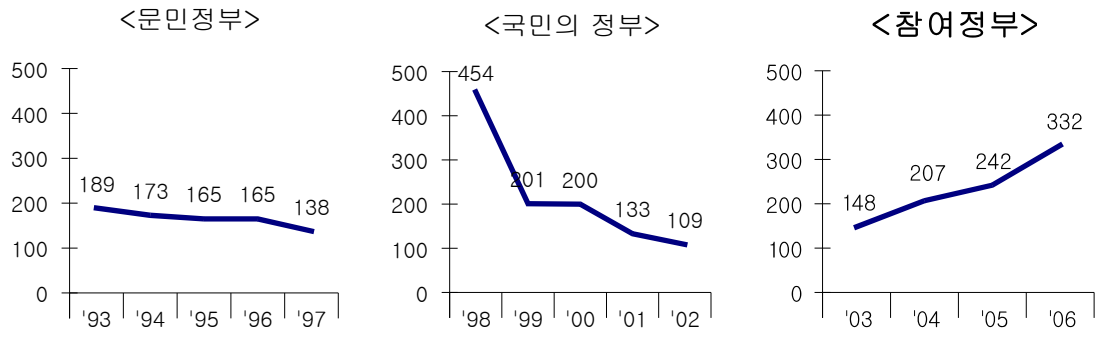

○ 제출된 **정부입법**의 **국회 처리 결과**를 보면, **2005년까지** 597건을 제출하여 그 중 **약 90%**인 534건이 **통과**

- **2006년**에 제출한 정부입법의 통과율은 다소 낮은 편이나, 이는 국회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2007년 상반기 임시국회**로 그 처리를 미룬 것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파악됨

[통과는 2007년 2월말 현재의 현황임]

* 2003년 148건 제출 → 142건 통과: 95.9%
* 2004년 207건 제출 → 196건 통과: 94.6%
* 2005년 242건 제출 → 196건 통과: 80.9%
* 2006년 332건 제출 → 158건 통과: 47.5%

※ 통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제출한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 통과되는 경우도 많은 바, 그 추세를 고려하면, 2005년과 2006년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220건) 중 상당 수가 2007년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

□ 의원입법

○ **참여정부** 출범 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의원입법의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가 급증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발 의	701건	1,926건	5,161건
통 과	176건	340건	793건
국회 통과율	25.1%	17.6%	15.3%

○ 과거 정부와 달리 국회통과 법률안 중 **의원입법 비율**(793건; 55%)이 처음으로 **정부입법 비율**(647건; 45%)을 **초과**

-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와 **대비**되는 현상

< 역대 정부별 국회통과 법률안의 정부·의원입법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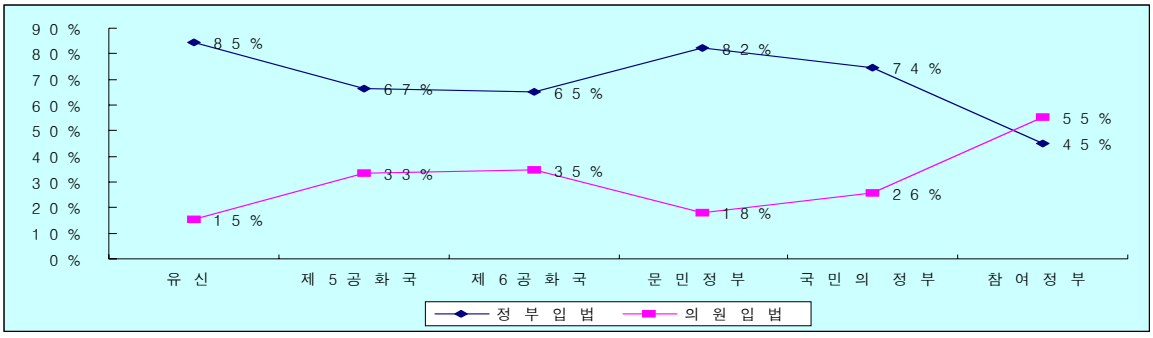

○ 한편,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회**를 **통과**한 793건의 의원입법 중 72건(9.1%)은 사실상 **정부**가 입안 지원한 법률로 파악됨

– 이는 **급속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회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결과

※ 사실상 정부가 입안 지원한 의원입법 주요 사례 (예시): [붙임 1]

2 입법추진 특징

□ 내용적 측면

○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 추진

– **정부혁신** 6대 **로드맵**과 **대선 공약** 등 이행을 위해 계획적 입법추진

※ **문민정부**는 부정방지대책 등 각종 국정개혁안 마련에, **국민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참여정부**는 그 기반 위에서 실효성 있는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국정보고 및 전국순회토론회, 당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 [붙임 2]**

※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사항 추진 현황: [붙임 3]

○ 입법환경 **대응 시스템** 마련과 **법령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병행**

※ 의원입법에 대한 대응, 재량행위 투명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붙임 4]

□ 절차적 측면

○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친 입법 증가

–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절차·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입법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확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31.):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시책의 입안을 위해 공청회 등 90차례 이상 토론 실시
* **「문화예술진흥법」**(개정, 2005.1.27.):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입안

○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한 입법 증가

–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시킴으로써 **갈등의 처리**와 **사회 통합** 역할을 수행한 입법 증가

*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제정, 2005.12.23.) : 주요 이해관계자인 항운노조의 의견을 입안 시부터 적극 수렴하여 이해대립 해소
* **「해양환경관리법」**(제정, 2007.1.19.): 골재채취업체, 석유협회, 정유회사,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 이해관계인과 50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의견 일치 유도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 입법 증가

– 입법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홍보**를 통해 미리 사회 공감대 확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방송매체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 **「긴급복지 지원법」**(제정, 2005.12.23.): 입안 단계부터 법률 명칭을 공모하는 등 적극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참여정부 입법추진 주요 우수사례 (예시): [붙임 5]

Ⅱ.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주요 성과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의 추진

□ 개요

○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 추진을 위한 **개혁법안** 121건 중 110건(90%)이 **국회 통과**, 지속적인 **정부 혁신**의 **토대 구축**

< 정부혁신 6대 로드맵 과제별 입법추진 현황 >

	지방분권	인사개혁	재정개혁	행정개혁	전자정부	기록관리	총계 (건)
국회 통과	57	2	18	11	21	1	110
국회 계류	2	–	3	3	1	2	11
총계 (건)	59	2	21	14	22	3	121

□ 지방분권 촉진

○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 노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2004.1.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 2004.1.16.), **「지방재정법」**(개정, 2005.8.4.): 지방분권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

□ 재정 개혁

○ **재정**의 **효율성·투명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961년 「예산회계법」 제정 이후 45년만에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

* **「국가재정법」**(제정, 2006.9.7.): 톱다운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조세지출 예산제도(비과세·감면·공제의 내역 등을 공표하는 제도) 도입

□ 행정 개혁

○ 행정업무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확대

>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07.1.3.):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 ※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2006.11.14. 국회 제출, 행자위 계류중

□ 인사 개혁

○ 인사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부 인사·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정부**의 **효율화·내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

> *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5.12.29.):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 조직 관리의 유연성 제고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2005.3.24.),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2005.4.27.):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으로 인력과 예산 운영을 효율화

□ 전자정부 구현

○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4.1.29.):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법 정비:** 전자정부 구현과 민원 처리의 전자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2004.3.22.) 등 법률 16건을 개정하여, 민원과 관련된 국민 일상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킴

□ 기록관리 혁신

○ 종이 기록 위주의 **보존 중심**에서 전자기록 위주의 **활용 중심**으로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0.4.): 공공기록물 관리의 표준화·전문화를 추진하고, 정책 등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입법 증가

□ 사회적 변화와 수요를 미리 고려한 입법 증가

○ 단기적 수요에 대처하는 입법 차원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입법** 증가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5.1.27.), **「전자금융거래법」**(제정, 2006.4.28.):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비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5.5.1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2006.12.28.):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사전 대비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의 도입

○ **중장기적 사회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기적 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입법추진

> *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제정, 2004.1.20.):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선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2004.1.29.): 폭력적 집회·시위 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꿔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교통과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방지 대책도 마련 (사실상 정부입안 지원 의원입법: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제처 등에서 입안)

○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국민의 **가시적 지지**가 없더라도 공개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여론 조성**을 거쳐 입법추진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3.12.31.):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의 수도권 대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에 관한 선진 기준을 도입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 2004.1.29.):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명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비

3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노력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내실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2003.4.22.): 규제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발전법」** (개정, 2004.1.20.):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활성화 도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2004.12.31):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방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사실상 정부 입안 지원 의원입법)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한 경제시스템** 정착 노력 강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2003.12.11.):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05.12.29.): 실제의 제품정보와 광고 간 진위 여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통합공고 제도 도입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점차 심해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시책 마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2003.7.29.):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관리를 강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2003.9.29.):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도모

4 취약 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 증가

○ **양성 평등**에 기초한 성(性) 인지적 관점의 법령 개선과 **여성·가족·보육** 및 **청소년** 등의 **통합적 여성·청소년정책 체계** 구축

> * **「정부조직법」·「청소년기본법」** (개정, 2005.3.24.): 여성·가족·보육 등의 통합적 여성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청소년 보호·육성을 통합한 청소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설치
> * **「민법」** (개정, 2005.3.31.):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호주제 폐지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2005.1.27.): 교통약자 보호제도 마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2005.12.30.): 장애인 고용 촉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 행위** 규제를 위해 **비정규직 관련 3법** 제정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8.16.):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권익보호 장치 마련(사실상 정부 입안 지원 의원입법)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2.21.) 등 3건: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생활 곤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주거·교육·의료 등 **부분 급여**를 **지급**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2006.12.28.): 차상위계층 부분 급여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6.12.30.):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의 근로장려 세제 도입

Ⅲ.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과제

1 주요 정책과제의 마무리 입법 추진

○ 정책과제 **로드맵** 및 **공약 이행**과 **주요정책 추진**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 **「자치경찰법」**(로드맵 관련, 행자위, 2005.11.3. 제출)
> * **「형사소송법」**(사법개혁 관련, 법사위, 2006.1.5. 제출) 등 20개 사법개혁법안

○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사항과 **주요정책** 추진 등을 위해 **남은 과제**는 2007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국회 제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약 관련): 특수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으로 보험사각 지대 해소

2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등에 의한 입법 추진

○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Vision 2030 등 **장기 계획**에 따라 금년 입법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안정 도모
>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

○ 혁신과 개혁을 위한 입법의 결과가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추진**과는 별도로, 분석된 **참여정부의 객관적 입법성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 등**이 함께 **회람·공유**하고,

– 아울러 **국민**도 **수요자 관점**에서 알기 쉽도록 **분야별**로 **정리**하여 **'참여정부 법제 백서'**를 발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 추진

붙임 1. 정부가 사실상 입안 지원한 의원입법 주요 사례 (예시)

구 분	주요 법률안과 그 주요 내용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분야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 2004.12.31.) –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 ▪ 지방교부세법(개정, 2005.1.5.)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세액 전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확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5.3.18)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 지방자치법 (개정, 2005.3.24.) –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폐지·이양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2005.3.31.) –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쟁 질서 확립 분야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정, 2003.7.29.) –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시설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하여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기본틀 마련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2003.9.3.) – 부실 수산업협동조합과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어업인과 어촌경제의 안정을 도모 ▪ 지방세법(개정, 2005.1.5.)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며,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7.) –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고 있는데,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23.) – 투기우려지역에서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부재(不在)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도모 ▪ 예금자보호법(개정, 2006.3.24.) – 공적자금을 제 때에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을 금융기관까지 확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6.10.27.)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

삶의 질과 주거복지 향상 분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3.12.31.) –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임대 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임대주택법(개정, 2005.7.13.)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7.)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등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조치 입법화 ▪ 주택법(개정, 2005.12.23.) –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등 8·3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입법화 ▪ 지방세법(개정, 2006.9.1.)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 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

사회·문화 및 통일 관련 분야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8.16.) –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3.12.31.)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전한 보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9.)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력적 집회·시위와 장기간의 집회 선점 및 위장집회를 방지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지역 거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 ▪ 근로기준법(개정, 2005.3.31.) – 체불의 예방과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취업 최저 연령을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으로 상향 조정하며,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의 작성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강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2005.5.31.) – 남북 왕래, 북한주민 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하는 한편, 남·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결정의 취소 사유와 협력사업의 승인 요건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

사회·문화 및 통일 관련 분야	▪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05.5.31.) – 국가는 산전후 휴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2005.12.29.) –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함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2006.10.4.) –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된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기 쉽게 개선

붙임 2.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2007. 2. 말 기준)

구분	법 령 명	관 련 과 제	현 황
지방분권 (10 + 49)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06.1.11. 제정
	지방자치법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도 도입	'05.1.27.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등) 조례제·개폐 청구제 개선 중앙·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06.1.11. 개정
		지방의정활동 강화	'06.4.28. 개정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 강화	행자위 계류 중 ('06.11.17. 국회제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06.2.21. 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교육자치제도 개선	'06.12.20. 개정
	자치경찰법	자치경찰제도 도입	행자위 계류 중 ('05.11.3. 국회제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04.1.16. 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06.12.20. 개정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	'05.1.27. 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법사위 계류 중 ('06.1.18. 국회제출)
	공직선거법	지방선거제도 개선	'05.8.4. 개정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제도 도입	'04.1.29. 제정
	지방이양 관련 법령 (49개)	중앙행정의 지방이양	49개 개별법령 개정 완료 ('05.6.)
인사개혁 (2)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 도입	'05.12.29. 개정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06.3.6. 국회통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05.1.27. 제정

구분	법 령 명	관 련 과 제	현 황
재정개혁(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04.1.16. 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제도개선	'04.1.29. 개정 '05.1.5. 개정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지방양여금제도개선	'04.1.29. 폐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운영자율성 확대, 지방재정운영책임성 강화	'05.8.4. 개정
	국가재정법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재정위험요인관리시스템구축, 국가채무관리시스템 구축	'06.9.8. 제정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05.5.31.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 R&D체계 효율화	'04.9.23. 개정
	국유재산특별회계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5.11.23. 폐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12.30. 개정
	기업예산회계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10.4. 개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12.28. 폐지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12.26. 폐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특별회계·기금정비	'05.12.8.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12.30. 개정
	군인연금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12.30. 개정
	방위사업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5.12.30.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	특별회계·기금정비	재경위 계류중 ('04.7.5. 국회제출)
	문화예술진흥법	특별회계·기금정비	문화위 계류중 ('05.11.7. 국회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특별회계·기금정비	'06.4.6. 개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별회계·기금정비	'05.12.8.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특별회계·기금정비	보건복지위 계류중 ('06.3.14. 국회제출)
행정개혁(14)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06.3.24. 제정 '06.10.4. 개정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국가평가인프라 구축(행정개혁)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지방분권)	법사위 계류 중 ('05.10.18. 국회제출)

구분	법 령 명	관 련 과 제	현 황
	정부조직법	정부조직 재설계 －소방방재청 신설 －과학기술부 기능 조정 －여성가족부/청소년위 설치 －복수차관제 도입	 '04.3.2. 개정 '04.9.1. 개정 '05.3.24. 개정 '05.6.30. 개정
	외무공무원법	정부조직 재설계(외교통상부 혁신)	'05.10.19. 개정
	소비자기본법	정부조직 재설계(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기능 조정)	'06.9.27. 전부개정
	통계법	정부조직 재설계	법사위 계류 중 ('06.3.30. 국회제출)
	책임운영기관법	분권형 조직설계	'04.12.30.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공 소비민원 처리제도 개선	'06.3.3. 전부개정
	정보공개법	행정정보 공개확대와 접근성 제고	'04.1.29. 전부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옴부즈맨제도 도입	'05.7.29. 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행정개혁) 자원봉사활동 장려 지원(지방분권)	'05.8.4. 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06.3.24. 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05.5.18.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법률	부조리 유발제도 규제개선과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법사위 계류 중 ('05.11.9. 국회제출)
전자정부 (1+21)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구현과 안전성 관련 법제 정비	행자위 계류중 ('05.7.11. 의원입법 발의)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법 (21개)	전자정부구현과 안전성 관련 법제 정비	17개 법률 개정 4개 법률 입법예고중
기록관리 (3)	공공기록물관리법	기록관리 법제정비	'06.10.4. 제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대통령 기록관리 법제 정비	법사위 계류중 ('06.7.18. 국회제출)
	비밀관리법	정보공개법 개정, 비밀설정과 해제에 관한 법제 정비	07년 임시국회 제출예정

붙임 3.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사항 추진 현황

□ 참여정부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 사항

○ 1,347건의 대선공약에 대해 **법제처**에서 검토한 결과, **입법조치**가 필요한 공약의 수는 **총** 132개(핵심공약 74건, 기타 공약 58건)로 파악

※ 법제처에서는 2003. 2. 「대선공약 입법사항 검토」를 발간하는 등, 입법조치 필요 사항의 사전 법적 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화 지원

□ 참여정부 대선공약 중 입법조치 필요사항 추진 현황

○ 132개 **공약**에 대한 입법추진 현황을 **2007년 2월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총** 110건(83.4%)의 공약이 입법추진을 완료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

- 입법조치 완료 : 총 77건
- 정상적으로 입법추진 중*: 33건

* 입법조치가 일부 완료되었거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우 등 그 이행을 위한 입법절차가 대체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사항

○ **입법추진이 미진한** 22건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입법이 되도록 노력

<입법조치 필요공약 추진현황 총괄>

구 분	입법조치 완료	정상추진	입법추진 미진	계
건 수	77 (58.4%)	33 (25%)	22 (16.6%)	132 (100%)

붙임 4. 입법환경 대응 시스템 마련과 법령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

□ 입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 강화

○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통과 건수가 급증하여 집행상 문제 발생 가능

구 분	법률안 제출 건수		
	정부제출	의원발의	계
16대 국회 (2000 ~ 2004)	595 (23.7%)	1,912 (76.3%)	2,507
17대 국회 (2004 ~ 2006)	753 (14.6%)	4,411 (85.4%)	5,164

○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의견조정·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강화

– **법제처**에 의원입법 검토 전담조직인 '**법제지원단**'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설치(2006. 6. 16.)

□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

○ 행정 재량권의 적정 행사를 위한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 정비

– 불명확한 법령 규정으로 인한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재량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중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발굴·정비하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 추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비할 대상 법령 369건 중 243건을 정비(65.8%) 했고, 행정규칙은 대상 105건 중 80건을 정비(76%) 완료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본격 추진

-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1,150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 착수(2006. 5. 30. 5개년 계획 국무회의 보고)

※ 5개년 계획에 따라 2006년에 국민 생활 관련 63건의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이 중 2007. 3. 6. 1차적으로 38건 국회 통과), 2007년부터 4년간 매년 250여건의 법률 정비 예정(2007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까지 정비할 예정이므로 결국 4천여개의 현행 법령 모두를 알기 쉽게 정비

○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기반 구축

- 법령안의 입안 등 **정책형성 단계**부터 법령 제·개정 이후의 **정책 집행 단계**까지 입법의 모든 과정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입법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기반 구축 (2009년 도입 목표)

붙임 5. 참여정부 입법추진 주요 우수사례 (예시)

□ 내용적 측면

구 분	주요 법률안 예시
로드맵 과제에 따른 계획적 입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2004.1.16.)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 지방화 촉진, 분권형 국가운영체제의 구축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지방분권특별법(제정, 2004.1.16.) – 지방분권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조건・범위・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 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주민투표법(제정, 2004.1.29.)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주체,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주민투표의 효력 등을 정하여 주민투표법을 본격 도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9.) –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미리 작성・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법[주민등록법 (개정, 2004.3.22.) 등]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신청・교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민원처리 업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16개 관련법을 일괄 정비 ▪지방자치법(개정, 2005.1.27.)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

로드맵 과제에 따른 계획적 입법	▪정부조직법(개정 2005.3.24, 개정, 2005.12.29.) –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5.7.29.) –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지방재정법(개정, 2005.8.4.)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총액 한도제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 ▪국가공무원법(개정, 2005.12.29.) –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2006.3.24.) –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정, 2006.5.24.)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 도입 ▪국가재정법(제정, 2006.9.7.) –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의 기본법 마련

로드맵 과제에 따른 계획적 입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06.10.4.) –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 범위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고 등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2007.1.3.)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선도적 입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3.12.31.) –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나,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바, 꼭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준을 과감하게 도입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2004.1.20.) –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과 증권시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 2004.1.29.) –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생명과학 기술에서의 윤리와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비 ▪국어기본법(제정, 2005.1.27.) –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는 미흡하였는 바, 민족 제일의 문화자원이며 국가경쟁력의 큰 요소인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도모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선도적 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5.1.27.) – 이동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미리 대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05.3.31.)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유형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아 인터넷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리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육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2005.5.18.) –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 ▪공직자윤리법(개정, 2005.5.18.)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대표적 사례(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해 엄격한 윤리 관련 규정(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두어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 ▪우주개발진흥법(제정, 2005.5.31.) –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세계 10위권의 우주개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석 마련 ▪발명진흥법 (개정, 2006.3.3.) – 전체 특허출원 중 민간 부문의 직무발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 직무발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2006.3.24.) –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종전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결과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선도적 입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2006.3.24.)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은 현재보다는 후세를 위해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 자산인 바,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설립하여 문화적·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 마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정, 2006.12.26.) – 부존자원의 고갈 추세에 따라 향후 대체 에너지 개발·이용이 시급한 과제인 바, 미래의 대용량·청정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의 진흥·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 2006.12.28.) – 자주국방을 위해 병력규모의 조정, 민간인력과 여군인력의 활용 확대, 문민 기반의 조성과 3군의 균형 발전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2020년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국방개혁 과제를 법제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 2006.12.28.)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친화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노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정, 2003.4.22.)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2003.7.29.) – 어음을 포함하는 외상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벤처기업 성장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정, 2003.9.29.)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노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 2003.10.4.)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도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 2003.12.11.) –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6년)를 의무화하고,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규정 ▪증권거래법(개정, 2003.12.31.)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 실시 ▪산업발전법(개정, 2004.1.20.)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 투명성 제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2005.12.7.) –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나가는 한편,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12.29.)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 등도 포함하여 통합 제공하는 통합공고 제도를 도입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노력	▪전자금융거래법(제정, 2006.4.28.) – 종전의 금융관련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전자금융 사고 시의 금융기관 책임 강화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검사·감독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소비자기본법(전부개정, 2006.9.27.) –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도입
취약계층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8.16.) –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 아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모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2003.12.30.) – 일부 부유층의 변칙·탈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과세 유형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 ▪유아교육법(제정, 2004.1.29.) – 취학 전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만 5세 이상의 유아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 실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4.3.5.) –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제체 마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4.3.22.) – 한·칠레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 마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 2004.3.22.)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전의 윤락행위 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종합적인 성매매 방지제도 마련

취약계층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 2005.1.27.)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 ▪정부조직법(개정, 2005.3.24.) –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민법(개정, 2005.3.31.) –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호주 제도를 폐지 ▪긴급복지지원법(제정, 2005.12.23.) –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현상의 완화 도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2005.12.30.) –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육성하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비정규직 보호 3법(제정, 2006.12.21.) – 사회 양극화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에 대한 개선 기반 구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2006.12.28.)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거·교육·의료·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6.12.30.) –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의 사회안전망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2회, 관계전문가 실무회의 16회, 관계전문가 자문 27회 등을 거치는 한편, 29회의 제도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민단체(경실련)와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지지 획득

□ 절차적 측면

구 분	주요 법률안 예시
국민참여와 설득・협의 노력을 기울인 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31.) – 대규모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허용범위를 30퍼센트에서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하기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재계・학계・시민단체・유관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간담회 등 90차례 이상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 유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31.)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이해관계자, 산・학・연의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하는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리플렛 배포, 방송매체・전문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문화예술진흥법(개정, 2005.1.2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둘러싸고 예총・민예총 등 예술단체간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으나 법령안 입안 단계부터 문화예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문화예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1.27.) – 기존 퇴직금 제도의 존치와 퇴직연금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해소를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각종 쟁점에 대해 의견수렴과 토론기회 제공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5.3.31.) –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계 부처・국회에 대한 설명・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조정 등을 통해 관계 부처・기관・단체의 합의 유도

국민참여와 설득·협의 노력을 기울인 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 인터넷 사기 등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불식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결제대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5.8.4.) –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대화와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은 시민단체 등의 중립적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견 해소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제정, 2005.12.23.) – 법안의 이해관계자인 항운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의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긴급복지 지원법(제정, 2005.12.23.) – 법률 입안단계부터 법률명칭을 공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워크샵·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해양환경관리법(제정, 2007.1.29.) –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해양환경과 관련된 이해단체가 많아 공청회(2회), 설명회(3회), 그 밖의 조정회의(5회) 등 50여 차례의 의견수렴과 설득을 병행하여 입법화

<의안 소관 부서명>

법 제 처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연 락 처	(02) 2100 - 2751